

고성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7. 2. 12.

발 의 자 : 박상수의원 외 3인

1. 제안이유

- 국내여비규정 개정('96.12.31 대통령령 제15247호)으로 여비의 지급액 및 현지 교통비의 명칭이 일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 "숙박비"를 "숙박료"로 명칭변경 (안 제6조제1~3항)
- 나. 여비지급기준 변경 (안 별표1)

3. 관련법규

-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(대통령령 제15247호)

고성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중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 하고, "숙박비"를 "숙박료"로 한다.

동조 제2항중 "숙박비"를 "숙박료"로 한다.

동조 제3항중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 한다.

[별표 1] 의 일비 및 숙박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1]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(제6조제3항 관련)

구 분	일 비 (1일당)	숙 박 료 (1일당)
의 장	10,000	41,000
부 의 장		
의 원	10,000	19,50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 표

	현				해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【 별표 1 】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6조제3항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 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8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철도 운 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선 박 운 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항 공 운 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자 동 차 운 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현 지 교통비 (1일당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숙 박 비 (1일당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식 비 (1일당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의 장 부의 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등 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 등 정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,5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7,5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,000</td> </tr> <tr> <td>의 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 등 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 등 정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,5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비 고 : 1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수로여행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,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</p>								구 분	철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 동 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 박 비 (1일당)	식 비 (1일당)	의 장 부의 장	1 등 급	2 등 정 액	정 액	정 액	6,500	37,500	25,000	의 원	2 등 급	2 등 정 액	정 액	정 액	6,500	18,000	18,000
구 분	철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 동 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 박 비 (1일당)	식 비 (1일당)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장 부의 장	1 등 급	2 등 정 액	정 액	정 액	6,500	37,500	25,000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원	2 등 급	2 등 정 액	정 액	정 액	6,500	18,000	18,000																			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

【 별표 1 】

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6조제3항 관련)

(단 위 : 원)

구 분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 동 차 운 임	일 비	숙 박 료	식 비
					(1 일 당)	(1 일 당)	(1 일 당)
의 장 부 의 장	1 등 급	2 등 정 액	정 액	정 액	10,000	41,000	25,000
의 원	2 등 급	2 등 정 액	정 액	정 액	10,000	19,500	18,000

- 비 고 : 1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2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,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